의안번호	2209939
의 뢰 인	임호선 의원
회 답 일	2025. 5. 29.
추계번호	25B241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4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난임치료・유산・사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원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4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4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난임치료·유산·사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지자체 사업)과 임신·출산·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 사업(해양수산부 사업)이 있음

[표 1]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액)**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에 대해 지자체별 1일 60,000~97,216원 지원 (0~30% 자부담) **(지원일수)** 지자체별로 45~90일 한도내에서 지원 **(신청기간)**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지원단가·지원일수·자부담 비율은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첨부 [참고자료 1] 농가도우미 사업현황 참고)	2,185 (지방비)
어업활동지원[1]	**(사업내용)**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1일 8만원(최대 10만원 기준)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80 (국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12)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난임치료·유산·사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요건,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원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개정안의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지원과 유사한 제도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유산·사산) 여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고용노동부 사업)이 있음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적용제외	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비임금근로자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

- (지원수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참고자료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가도우미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영농 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 시행방법 : 각 시·도별 자체 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지원액: 지자체별 1일 60,000~97,216원 지원(0~30% 자부담)
- 지원일수: 지자체별로 45~90일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지원단가·지원일수·자부담 비율은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시·도	지원 기간 (일)	기준단가 (1일)	'24년 실적		'25년 계획		예산비중('25)			비고 (도비+시군비)
			인원 (명)	금액 (백만)	인원 (명)	금액 (백만)	도비	시군비	자부담	
경기	90	97,216	22	149	17	150	20	80	-	100
충북 (영동, 괴산, 음성)	80	79,000~80,000	6	49	9	61	-	70~88	12~30	70~88
충남*	45~60	60,000~100,000	9	26	28	99	-	80~100	0~20	80~100
전북	100	90,000	45	364	45	405	25	65	10	90
전남	(여)70 (남)20	80,240	71	256	77	288	10	70	20	80
경북 (구미, 울릉 제외)	(여)90 (남)10	90,000	68	310	144	648	24	56	20	80
경남*	90	81,000	38	260	48	350	20	65	15	85
제주	90	80,240	28	182	32	184	100	-	-	100
계			287	1,596	400	2,185				

* 충남(7개 시군): 서산, 논산, 청양, 금산, 부여, 홍성, 예산
* 경남(13개 시군)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참고자료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개요('19.7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추진배경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를 지원받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임

○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출산급여 지원(일반회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적용제외	**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비임금근로자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 출산급여 대상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지원수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참고자료 3]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table>
<tr><th>구분</th><th>유·무급 여부</th><th>기간</th><th>제도 개요</th></tr>
<tr><td>육아 휴직 (고평법 제19조)</td><td>무급</td><td>1년 (최대 1년 6개월)</td><td>■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1년(최대 1년 6개월)간 휴직 부여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25.2.23. 시행)
■ <급여 지원>
<table><tr><th>구분</th><th>휴직 기간</th></tr><tr><td>현재</td><td>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td></tr></table>※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24.1월 시행)
–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45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월 상한액(예시)
<table><tr><th>구분</th><th>父 1월</th><th>父 3월</th><th>父 6월</th></tr><tr><td>母1월</td><td>父: 250
母: 250</td><td>父: 750
母: 250</td><td>父: 1,350
母: 250</td></tr><tr><td>母3월</td><td>父: 250
母: 750</td><td>父: 800
母: 800</td><td>父: 1,400
母: 750</td></tr><tr><td>母6월</td><td>父: 250
母: 1,350</td><td>父: 750
母: 1,400</td><td>父: 2,000
母: 2,000</td></tr></table>→ 부모 각각 최대 2,000만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처벌규정>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벌금</td></tr>
<tr><td>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고평법 19조의 2)</td><td>무급</td><td>1년~ 3년 (최대)</td><td>■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급여 지원>
<table><tr><th>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th><th>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th></tr><tr><td>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td><td>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td></tr></table>■ <벌칙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유·무급 여부</th><th>기간</th><th>제도 개요</th></tr>
<tr><td>출산전후휴가(기준법 제74조 제1항)</td><td>유급 무급</td><td>90일 ~120일</td><td>■ <휴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잔여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무급
■ <급여 지원>
<table><tr><th>구분</th><th>최초 60일(다태아 75일)</th><th>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th></tr><tr><td>우선지원 대상기업</td><td><정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 지급</td><td><정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tr><tr><td>대규모 기업</td><td><사업주> 통상임금 지급
* 정부 지원 없음</td><td><정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td></tr></table>■ <벌칙규정>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유산·사산 휴가(기준법 제74조 제3항)</td><td>유급 무급</td><td>5일 ~90일</td><td>■ <휴가>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 최초 60일은 유급, 61~90일은 무급
※ 임신기간별 휴가기간
– 15주 이내: 유산 · 사산일부터 10일
– 16주~21주 이내: 유산 · 사산일부터 30일
– 22주~27주 이내: 유산 · 사산일부터 60일
– 28주 이상: 유산 · 사산일부터 90일
■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벌칙규정> 유산사산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고보법 제77조의4·제77조의9)</td><td>–</td><td>–</td><td>■ <급여 지원>
– 지급기간: 출산시 출산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 지급수준: 월평균보수 100%
※ 지급요건: ①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③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td></tr>
</table>

구분	유·무급 여부	기간	제도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 (고평법 18조의 2)	유급	10일	■ <휴가> 배우자 출산시 20일(유급)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분 지원 (상한 1,607,650원) ■ <벌칙규정>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난임치료휴가 (고평법 18조의 3)	유급 무급	연간 6일	■ <휴가> 난임치료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 160,760원) ■ <처벌규정> 난임치료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5.2월> 확대 - <기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변경>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최초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